韓國環境法學會 會則

第1條(名稱) 本會는 韓國環境法學會라 한다.

第2條(目的) 本會는 環境法의 硏究와 硏究者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고, 韓國法學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韓國法學院 안에 둔다.

第4條(事業) 本會는 第2條의 目的를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한다.

1. 硏究發表會 및 學術講演會의 開催
2. 硏究誌를 비롯한 圖書의 刊行
3. 環境問題에 관한 關係機關에의 諮問 및 建議
4. 外國學界와의 交流
5. 其他 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議決한 事業

第5條(會員의 種類 및 資格) ①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과 名譽會員으로 한다.

② 正會員은 環境法의 硏究에 關心이 있는 敎授, 法曹人, 公務員 기타 環境法關係專門家로 한다.

③ 名譽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여 本會의 發展에 寄與한 者로서 理事會가 推薦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은 者로 한다.

第6條(會員의 加入) 正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條(任員) 本會에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會　　長　　1 人
2. 副 會 長　　2 人
3. 常任理事　　3 人
4. 理　　事　　若干人
5. 監　　事　　2 人
6. 幹　　事　　2 人

第8條(顧問) ① 本會에 顧問 若干人을 둘 수 있다.

② 顧問은 理事會의 推薦에 의하여 會長이 推戴한다.

第9條(任員의 選出)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하되, 幹事는 會長이 任命한다.

第10條(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第11條(任員의 職務와 權限)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總會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되며, 本會의 業務를 執行한다.

② 副會長은 會長 有故時에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會長, 副會長 및 常任理事는 常任理事會를 構成하며, 常任理事는 理事會의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

④ 會長, 副會長, 常任理事 및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며, 理事會는 本會의 重要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⑤ 監事는 本會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한 監査를 行한다.

⑥ 幹事는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本會의 事務를 處理한다.

第12條(總會) 本會는 年 1回 定期總會를 開催하며, 會長 또는 常任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한 境遇에는 臨時總會를 開催할 수 있다.

第13條(委員會)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本會에 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14條(議決定足數 등) ① 總會의 決議는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② 常任理事會의 決議는 構成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③ 理事會의 決議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15條(會費 等) ① 本會의 財源은 會費와 其他 收入으로 充當한다.

② 會費에 관한 事項은 理事會가 決定한다.

第16條(會計) ①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日부터 12月末日까지로 한다.

② 監事는 會計年度 終了後 監査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는다.

第17條(會則改正) 會則의 改正은 理事會를 거쳐 總會에서 出席會員 3分의 2 以上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18條(準則) 이 會則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韓國法學院 研究學會規程 및 一般慣例에 따른다.

附 則

이 會則은 1977年 12月 7日부터 施行한다.